

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9. 7.(금) 10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-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- 제48차 회의의 회의록 및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-1.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결

- 2012년 제48차 회의의 안건 중 비공개로 진행된 안건은 명예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 및 발언위원의 성명 등을 음영처리하고, 나머지 안건은 음영처리 없이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함

⑥ 의결사항

가.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규제완화에 관한 건 - (2012-50-194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지상파TV 방송의 운용허용시간을 현재 06:00~익일 01:00(19시간)에서 00:00~24:00(24시간)로 변경하고, 자율적 운영을 허용하기로 의결함
- 아울러, 시청자 보호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해 TV 방송국 변경허가시 변경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함
- 변경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

< 변경허가 조건 >

-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할 것
 -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재배치 계획에 따른 방송국 채널변경시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정파시간을 확보할 것
- ※ 기존 TV방송국 공통조건 중 “수시편성에 따른 운용 허용시간 연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”은 삭제

< 권고사항 >

-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과 편성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매일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(01:00~06:00)의 40% 이내로 운용할 것
- 선정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‘19세이상 시청가 방송프로그램’을 매일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(01:00~06:00)의 20% 이내로 운용할 것
- 시청자 혼란 방지를 위해 방송시간의 확대·축소 등 방송운용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충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할 것
- 방송운용시간 자율화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성있고 참신한 편성정책 개발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노력할 것

나. 2013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에 관한 건

- (2012-50-195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- 주요내용
 - ① 선정 및 인정 기준
 - (공익채널) 심사결과 총점의 65% 이상 및 심사항목별 배점의 40% 이상 획득한 채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

- (장애인복지채널) 심사결과 총점의 70% 이상 및 심사항목별 배점의 60% 이상 획득한 채널

② 심사위원회 구성 계획

-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단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모두 심사
- 심사위원장 : 상임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
- 나머지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: 심사위원장이 책임자를 선정한 후,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

③ 심사위원회 운영 계획

-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기본계획을 근거로 제출서류 검토 등을 통해 신청 채널을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함
-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결과를 의결함

④ 심사항목 및 배점

심 사 항 목(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)	배 점	
	공 익	장애인복지
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(장애인복지와 적합성)	200	200
공정성·공익성 및 실현가능성	300	300
운영계획의 적정성	300	280
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	100	120
시청자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	100	100
합 계	1,000	

※ 2009년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(舊방송위 포함)의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처리 하되, 25점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결정

o 추진일정

- 신청요령 공지 : 9. 7 예정
- 신청서 접수 : 9. 26 ~ 9. 28
-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: 10월 ~ 11월 초
- 선정 및 인정 결과 위원회 의결 : 11월 초
- 분기별 운영계획서 접수 : 12월 말

7] 보고사항

가. (주)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
- o (주)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가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한 서비스라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방안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- o 후속 조치방안
 - ① 판단기준 : (주)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시정권고 이행여부, 시청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속 조치방안을 결정

< 시정권고 주요내용('12.8.30.) >

- ① DCS 방식을 통한 위성방송사업의 신규 가입자 모집 즉시 중단
- ② 기존 가입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 방식 변경 등 적절한 조치 촉구
- ③ 매주 DCS 방식을 통한 위성방송사업 가입자 수 제출

② 후속 조치방안

- 신규가입자 모집을 지속하는 등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부과
-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경우, 행정처분 부과하지 않음

o 향후 일정

- '12. 9. 10. : (주)케이티스카이라이프, 행정처분 사전예고통지에 따른 의견제출(예정)
- '12. 9월 중 : 관련 법령 위반상황 지속 시,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예정(필요시 청문 실시)

8]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별도 통지키로 함

6. 폐 회 (11:10)